

4. 山林法 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山林廳 公告 第1996-10號 1996. 11. 21

주요 내용

- 가. 대체조림비 면제사업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(공장과 그 관련시설에 한하며,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)으로 확대함.
- 나. 영 제24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지 총면적중 산림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준보전임지가 100분의 70 이상 편입되어 전용부담금이 면제되는 대상사업을 규정함.
- 다.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에서 국토 등으로부터 가시거리 1km 이내를 삭제함.
- 라. 신고에 의한 산림형질변경대상에 농·임업인과 관상수생산자가 자기소유의 임야를 개간하여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암석지가 아닌 경사도 30도 미만인 임지에 관상수식재, 준보전임지안에서 2천제곱미터 미만의 창고시설 설치 등을 추가함.

개정 취지

「경쟁력 10% 이상 높이기」 추진방안과 2000년대 쌀자급기반유지를 위하여 우량농지보전, 산지이용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쌀산업발전종합대책」의 추진을 위하여 대체조림비 면제대상 확대등 산지활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.

주택회보